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7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4.

발 의 자: 강준현 · 임광현 · 김남근

김기표 • 오세희 • 박용갑

채현일 • 윤건영 • 김 윤

김주영 • 박희승 • 복기왕

이기헌 • 민병덕 • 이수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 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중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,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.

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, 현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은 단 3명에 불과한 실정임. 이는 회원수가 39,000여명인 6·25참전유공자회 나 93,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음.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.

이에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, 6·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제8호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8호 중 "사람"을 "사람과 그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(미성년자는 제외한다)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,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단체	제3조(회원)		
(이하 "국가유공자등단체"라 한			
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		
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			
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: 「국	8		
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			
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9호			
에 해당하는 <u>사람</u> <u><단서 신</u>	사람과 그 유 <u>족</u>		
<u>설></u>	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		
	받는 사람(미성년자는 제외한		
	다). 다만, 보상금을 받는 유		
	족이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유		
	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		
	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에		
	따른 선순위자로 하되, 순위		
	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		
	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		
	<u> 우선한다.</u>		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		